

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서

[[]]가로주택정비사업, []소규모재건축사업, []소규모재개발사업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30일		
신청인	조합 명칭					
	대표자	성명			생년월일	
		주소			전화번호	
조합 설립 내용	주된 사무소 소재지				전화번호	
	사업 시행 예정 구역	구역 명칭			구역면적	m²
		위치				
	조합원 수		명	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	구역지정 고시일(년 월 일) 부터 () 이내	
동의 사항	토지등 소유자 수			명	동의율	% (동의자 수 / 토지등소유자 수)
		(토지소유자: 명)				
		(건축물소유자: 명)				
		(지상권자: 명)				
		(주택 및 토지소유자: 명)				
		(부대시설·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: 명)				
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	명 칭				대표자	
	주된 사무소 소재지				전화번호	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설립인가의 경우 가. 조합 정관 나. 조합원 명부(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다.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. 토지·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. 창립총회 회의록(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) 바.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. 주택건설 예정세대수(호수), 사업시행구역의 지번·지목 및 등기명의자, 도시·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, 대지(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)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. 변경인가의 경우 가.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. 변경내용(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) 및 그 증명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